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병국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9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발 의 자 : 고병국 의원 (1명)
찬 성 자 : 이상훈, 김종무, 노식래,
강대호, 이경선, 이석주,
정재웅, 김재형, 신정호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령(대통령령 제30151호, 2019. 10. 24. 시행)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‘나대지’를 추가함(안 제3조제3항).
- 나.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의 산정방법을 정함(안 제49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)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”란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”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사업시행구역 면적(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)에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(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)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

2.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제44조의 공동이용시설과 그 부속 토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~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3조(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)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”란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
<p>제49조(건축규제의 완화) ① (생략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”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</p>	<p>제49조(건축규제의 완화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”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사업시행구역 면적(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)에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(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)으로 나눈 용적</p>

률로 하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

2.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제44조의 공동이용시설과 그 부속 토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.